

연구이용 동의서
([]잔여배아 []잔여난자 []잔여정자)

(앞쪽)

동의서 관리번호	
----------	--

배아생성의료기관명		
잔여배아등의 기증자	성명	생년월일
해당 배우자	성명	생년월일
상담자	성명	
담당의사	성명	

※ 체외수정시술이 모두 끝나고 남은 잔여배아, 잔여난자 및 잔여정자(이하 "잔여배아등"이라 함)는 동의권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 연구 또는 희귀·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.

- 연구용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는 동의권자의 체외수정시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배아의 경우는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 또는 5년이 지나거나, 잔여난자 및 잔여정자의 경우는 동의권자가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후 연구에 이용됩니다.
- 잔여배아등은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고, 동의권자의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, 배아생성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동의권자는 연구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였더라도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권자는 연구용 제공에 대한 물질적·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, 향후 연구결과에서 파생되는 이득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.

※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.

잔여배아 정보		잔여난자 정보		잔여정자 정보	
배아생성 동의일		난자 채취일		정자 채취일	
잔여배아 수		잔여난자 수		잔여정자	(vials/straw)
잔여배아 상태		잔여난자 상태		잔여정자 상태	

※ "상태"란 동결보존, 성장이 멈춤, 비정상, 유전적 이상, 미성숙 등의 상태를 말합니다.

본인은 잔여배아등의 보존기간이 지난 후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잔여배아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의 잔여배아등을 연구용으로 이용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※ 주의: 잔여배아등을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와는 별도로 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
동의서 작성일	년 월 일
잔여배아등의 기증자	(서명 또는 인)
해당 배우자	(서명 또는 인)
상담자	(서명 또는 인)
담당의사	(서명 또는 인)